



제 439회 국회 (정기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및 과태료 규정 이관〉

■ 조계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20345호)

2026. 9.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및 과태료 규정 이관 (안 제4조의4, 제5조의2, 제6조의4 및 제18조제1항)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조계원 의원 등 10인
2. 발 의 일 : 2026. 7. 31.
3. 회 부 일 : 2026. 8. 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예술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예술인의 권리보장 체계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에 맞추어, 현행법상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및 계약서 보존에 관한 사항과 관련 과태료 규정을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4·제5조의2·제6조의4 삭제, 제18조제1항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 및 제3호의2 삭제 등).

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계원의원이 대표발의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34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III. 검토의견

1.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및 과태료 규정 이관(안 제4조의4, 제5조의2, 제6조의4 및 제18조제1항 삭제)

개정안은 현행법 제4조의4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의무 및 계약서 명시사항, 제5조의2 계약서의 보존, 제6조의4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문화예술용역계약 체결 여부에 관한 문화예술기획업자등에게 보고·자료제출 요구 및 해당 의무 위반시의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임.

현 행	개 정 안
<u>제4조의4(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①</u> <u>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의 당사</u> <u>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u> <u>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u> <u>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u> <u>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의 당사자는</u> <u>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u> <u>하여야 하며,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u> <u>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야 한다.</u> <u>1. 계약 금액</u> <u>2. 계약 기간·갱신·변경 및 해지에</u> <u>관한 사항</u> <u>3. 계약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u> <u>한 사항</u> <u>4. 업무·과업의 내용, 시간 및 장소</u> <u>등 용역의 범위에 관한 사항</u> <u>5. 수익의 배분에 관한 사항</u>	<삭 제>

현행	개정안
6.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 ③ 제5조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제2항을 위반한 경우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계약서 명시사항의 기재,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의 교부, 그 밖에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5조의2(계약서의 보존)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은 제4조의4제2항에 따라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6조(예술인의 경력 증명 등에 관한 조치 마련) ① · ② (생략)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예술인의 경력 증명 등을 위하여필요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고,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해당 자료를 보유·이용할 수 있다. 1. (생략) 2. 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에 관한 자료 3. (생략) 제6조의4(보고 및 검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계약의 체결 여부에 관한 사실	<삭 제> 제6조(예술인의 경력 증명 등에 관한 조치 마련)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1. (현행과 같음) 2.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16조----- ----- 3. (현행과 같음) <삭 제>

현행	개정안
<u>관계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예술기획업자등에게 관련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u> <u>이 경우 보고,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u> 제1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략) <u>1의2. 제4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문화예술용역 관련 서면계약을 작성하지 아니한 문화예술기획업자등</u> <u>1의3. 제4조의4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u> <u>1의4. 제5조의2를 위반하여 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서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u> 2. 3. (생략) <u>3의2. 제6조의4를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한 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u> 4. (생략) ② (생략)	제18조(과태료) ① ----- ----- -----. 1.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삭제> 2. 3. (현행과 같음) <삭제>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의2제1항 중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4에”를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16조에”로 한다.

현행법은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고, 예술인 복지 지원을 위하여 2011년 제정되었음.¹⁾

대한민국 헌법은 문화국가원리를 기본이념으로 채택하면서 예술의 자유와 예술가의 권리를 법률로써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²⁾ 그러나, 현행법 제정 이전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장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한 법률이 없었던 바, 「예술인 복지법」은 제정 당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규정하게 되었음.³⁾

그러나,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태’와 ‘예술계 미투운동’ 등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침해하는 사건의 발생으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구제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내용을 규정하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인권리보장법」’이라 한다)이 제21대 국회에서 제정되었음.

1) 「예술인 복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고, 예술인 복지 지원을 통하여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대한민국 헌법」

제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 ①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②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3) 「예술인 복지법」(법률 제11089호, 2011. 11. 17., 제정)

제3조(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① 예술인은 문화국가 실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공헌을 하는 존재로서 정당한 존중을 받아야 한다.

② 모든 예술인은 자유롭게 예술 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예술 활동의 성과를 통하여 정당한 정신적, 물질적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다.

현행 「예술인권리보장법」의 근거만으로는 예술인 권리침해행위를 능동적으로 해결하는데 일정 부분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기존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이던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의 예술인 권리보장 위원회로 명칭과 소속을 변경하고, 위원회에 사무처를 두도록 하며, 「예술인 복지법」에 규정되어 있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체결 의무와 계약서의 보존에 관한 사항을 「예술인권리보장법」으로 이관하는 등의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344호, 조계원의원대표발의)이 우리 위원회에 발의되어 있는 상황임.

전업예술인들은 고용형태상 프리랜서(자유계약자) 비율⁴⁾이 높고, 단기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많아 문화예술계 특성상 서면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수익 배분 등 주요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 상황이었음.

이 경우 예술인 등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아, 2016년 「예술인 복지법」(법률 제13970호, 2016. 5. 4. 시행) 개정을 통하여 서면계약 체결을 의무화하였고, 2019년 「예술인 복지법」(법률 제16887호, 2020. 6. 4. 시행) 개정을 통하여 계약서 보존 의무를 부과하였음.

4) 2024년 전업예술인 기준 프리랜서 비율은 61.7%임
문화체육관광부, 「2024 예술인 실태조사」. 2025.

당시는 「예술인권리보장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으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에 관한 사항을 일부 규정⁵⁾하고 있던 「예술인 복지법」에 해당사항을 규정할 수 밖에 없었음.

그러나, 계약서 상의 필수적 기재사항 누락, 구두 계약 등으로 불공정한 계약이 체결될 경우 예술인의 경제적 권리, 창작물의 권리를 보호받는 저작권, 예술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으므로 해당 사항은 예술인에 대한 복지 지원에 중점을 두는 현행법 보다는 예술인의 권리와 지위를 정당하게 보장받도록 하는 목적의 「예술인권리보장법」으로 이관하여 규정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보임.

다만,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344호, 조계원의원대표발의)은 현행 「예술인권리보장법」이 제2조제10호⁶⁾로 규정하고 있던 “예술인권리침해행위”를

5) 「예술인 복지법」

제3조(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① 예술인은 문화국가 실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공헌을 하는 존재로서 정당한 존중을 받아야 한다.

② 모든 예술인은 인간의 존엄성 및 신체적·정신적 안정이 보장된 환경에서 예술 활동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③ 모든 예술인은 자유롭게 예술 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예술 활동의 성과를 통하여 정당한 정신적, 물질적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다.

④ 모든 예술인은 유형·무형의 이익 제공이나 불이익의 위협을 통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다.

6)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예술인권리침해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제7조제2항을 위반한 행위

나. 제8조제2항을 위반한 행위

다. 제9조를 위반한 행위

라.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

마. 제14조제4항을 위반한 행위

제2조제11호로 수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있는 현행법 제10조 제1항제8호7)도 함께 수정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서면 계약 체결 의무 조항을 「예술인 복지법」에서 「예술인권리보장법」로 이관함으로써 예술인 권리보호 체계를 일원화하고, 문화예술용역 서면계약 관련 신고, 조사, 시정 및 제재 간의 연계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384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조계원의원 대표발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예술인권리침해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가. 제7조를 위반한 행위
- 나. 제8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
- 다. 제9조를 위반한 행위
- 라. 제14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
- 마. 제15조제4항을 위반한 행위
- 바. 제16조제2항을 위반한 행위
- 사. 제57조를 위반한 행위

7) 「예술인 복지법」

제10조(재단의 사업)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8.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각 목에 따른 예술인권리침해행위로 인한 피해 상담 및 법률적 지원